

장애아동의부모/보호자를위한절차적보호책에대한통보 (2018)

특수교육또는관련서비스를받거나혹은받을자격이되는장애를가진학생또는성인학생의부모/보호자로서,귀하는주와연방법에의해서보호되는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귀하에게부여된권리는아래에명시되어있습니다.아래명시된권리에대한자세한설명은귀하의자녀가속한교육청으로부터받을수있습니다.이문서를주의하여읽은후에자녀가받을서비스혹은귀하에게제공가능한절차적보호책에대한질문이있거나추가설명이필요하다면교육청에연락하시기바랍니다.

절차적보호책에대한통보는일년에단한번만가능합니다.단,첫평가요청시한부를제공받아야하며,직업변화를일으키는징계해임시혹은요청에의해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에대한최초민원청구또는최초정당한절차적민원청구에대한영수증도발급받아야합니다.

귀하의권리에대한추가정보는ISBE웹사이트 <https://www.isbe.net/Pages/Special-Education-Parents-of-Students-with-Disabilities.aspx> 에있는“Parent's Guide - Education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in Illinois ” (학부모를위한안내서 - 교육의 권리와 책임: 일리노이주 특수 교육에 대한 이해) (06/09) .

사전서면통보

지역교육청은귀하에게사전서면통보를제공할의무가있습니다.

- 교육청이귀자녀에대해신원증명,평가,교육적배정,또는무상의적절한공교육의제공을시작하거나개정할것을제안할때
- 교육청이귀하의자녀에대해신원증명,평가,교육적배정,또는무상의적절한공교육의제공을시작하거나개정할것을거부할때
- 혹은자녀가성년의나이(18세)가되기1년전에. 별도의결정외에는모든교육권리는부모(들)/보호자(들)에서학생으로이전됨

서면통보는제안했거나거부한활동이시작하기최소한10일전에제공되어야하며,아래사항을반드시포함해야합니다.

- 교육청에서제안했거나거부한활동에대한설명으로,교육청의활동제안또는거부에대한이유와교육청이고려한기타옵션들에대한설명과더불어그옵션들이거부된이유
- 교육청의활동제안혹은거부의근거로사용된평가절차,시험,기록또는보고서각각에대한설명
- 교육청의제안혹은거부와관련된기타요인에대한설명
- 귀하가정당한법적권리를지니고있다는진술과더불어,통보가평가를위한최초의언급이아니라면절차적보호책한부를얻을수있는방법
- 귀하의정당한법적절차의이해와관련해도움받을수있는공급자

통보는 반드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백히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니라면, 지역 교육청이 다음 의사항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통보가 귀하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역될 것과, (b) 귀하가 통보의 내용을 이해할 것과, (c) 이러한 요구 사항이 지켜졌다는 증명 서류의 확보.

부모동의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모든 관련된 정보가 귀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귀하가 활동에 대해서 면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지역 행정부는 반드시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서면 동의(주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를 얻어야 합니다.

- ◆ 초기평가-특수교육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초기평가의 실행시
- ◆ 초기서비스/배정-귀하 자녀에게 특수교육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할 때
- ◆ 재평가-귀하 자녀를 재평가할 때

이 지정된 양식에 명시되어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보험 혜택의 이용에 대한 동의와 IEP 대신 IFSP를 쓰겠다는 동의, 그리고 귀하 자녀의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포함합니다. 추가로, 지역 교육청은 동의가 요구되는 서비스와 활동을 제외하고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혜택에 대한 조건으로 귀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주내의 기숙사에 살고 귀하와 주거하지 않고 있다면, 교육청은 초기평가를 위한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청이 합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거처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일리노이주 법으로 인해 귀하의 권리가 종결되었거나, 혹은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판사가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박탈하고 판사가 지정한 자녀대표인 이 초기평가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교육청은 귀하의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으려는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또는 평가의 실행 이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는 교육청이 평가 혹은 재평가의 일부로서 현존하는 정보를 검토하기 전 또는 귀하가 속한 교육청이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행하기 전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모동의의 부재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초기평가-초기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에 대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청은 중재 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통해 초기평가의 실행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의 관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초기평가 실행을 실시하도록 교육청에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호소하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하 자녀가 자신의 현재 교육배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줍니다.

- ◆ 초기서비스/배정-특수교육혹은관련된서비스의초기제공에대한동의제공을거부한다면,교육청은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것입니다.또한,교육청은서비스제공을허락하는판정을얻기위해중재혹은정당한절차에대한수속을수행할수없습니다.

특수교육혹은관련된서비스의초기제공에대한동의제공하는것을거부하는경우, 교육청은귀하의자녀에대한무상의적절한공교육 (freeappropriatepubliceducation,FAPE)제공이라는교육청의의무에위배된것으로고려되지않을것입니다.해당교육청은귀자녀를위한IEP를개발하기위한모임을소집할필요도없습니다.

- ◆ 재평가-귀하가재평가에대한동의하기를거부한다면, 교육청은요구된사항은아니지만중재혹은정당한절차의청문회를통해절차를무효로할수있습니다.그러나,교육청은귀하의동의를얻기위해합당한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귀하가응답하지않은경우에는재평가를실시할수있습니다.교육청이이러한절차를밟지않겠다고결정할시에는귀하의자녀에게무상의적절한공교육제공이란사항에위배되지않습니다.

동의철회

만약귀하의자녀가현재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 귀하는언제든지서비스에대한동의를철회할권리가있으며구두또는서면으로동의철회가능합니다. 귀하가구두로동의를취소한경우, 교육청은귀하의철회일로부터 5 일이내에서면으로확인서를제공해야합니다. 귀하가구두혹은서면으로동의를철회할경우, 교육청은귀하의철회와모든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가중단되는날짜를사전에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서비스가중단되면, 귀하와자녀는일반교육학생으로간주됩니다. 특수교육의징계보호를포함하여자녀가이전에보유한모든권리와 의무 (본문서에서설명한대로) 또한중지됩니다.

참고 : 귀하의철회로인해귀하의자녀에대한모든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가완전히중지됩니다. 그러나귀하의자녀가받고있는서비스유형이나수준과일치하지않지만귀하의자녀가지속적으로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받아야한다고생각하면 "민원해결", "조정"및서비스에대한의견불일치의경우귀하의"적법절차심의"를통해권리에대한논의를하시기바랍니다.

부모의모임참여

귀하는자녀의신원조회,평가,자격,재평가,그리고교육적배치에대한모임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반드시주어져야합니다.귀하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교육청은모임개최10일전에서면통보를귀하에게줘야합니다. 통보는모임의목적과서로간에적합한모임장소와시간및누가참석할것인지에대해알려줘야합니다.또한,IEP모임에대한공지는귀하가귀하의자녀와관련하여특별한지식이나전문성을가진사람을초청하여귀하와함께참석할수있는권리가귀하에게있다는성명을반드시포함해야합니다.

귀하는부모로서귀하자녀의IEP팀의중요한일원이며,자녀의교육배정과관련된결정을내리는모임에참여할것을권장합니다. 하지만모임에참석할수없는경우,교육청은귀하의참여를확보하기위해반드시개인혹은회의에서전화를거는것을포함하여다른방법을사용해야합니

다. 귀하의 자녀가 받을 서비스와 배정에 대한 결정은 귀하의 모임 참여 없이도 IEP 팀에서 내릴 수 있지만, 상세한 전화 내용과 전화 내용의 결과, 그리고 귀하에게 보낸 서신과 답신 혹은 귀하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방문 결과를 포함하여 교육청은 상호 동의된 모임 시간과 장소의 준비 시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4세 6개월의 아동이나 그보다 어리지만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는 모임의 목적 중 하나가 귀하 자녀의 이행 서비스 요구에 대한 진술의 발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또한 교육청이 귀하의 자녀를 모임에 초대할 것과 모임에 대표자를 보낼 초대된 외부 기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청각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통역가를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귀하와 자녀가 모임의 진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EP 팀은 반드시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 만나야 하며, 매학년의 시작 전까지 귀하의 자녀를 위한 IEP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간 모임 이후에는, 귀하와 학교 측은 자녀의 IEP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IEP를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기록문서를 통해 IEP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IEP 팀 구성원들은 정정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와 학교 양측에게 편한 시간에 IEP 모임을 가질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절차

귀하의 교육청은 귀하의 자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할 때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의심된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교육청은 귀하의 자녀의 인종, 문화, 언어, 또는 장애에 대해 편견이 없는 기술적으로 건전한 도구와 절차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구와 절차는 귀하의 자녀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녀가 능한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초기평가

귀하 혹은 교육청에서 자녀의 초기평가에 대한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가 필요하다 고 결정되면, 교육청은 요구되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귀하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60일의 수업 일수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동의한 날 이후에 한 학년도에 60일 미만의 수업 일수가 남아 있다면 자격 사항이 판단될 것이며, IEP 회의는 다음 학년도 첫날 이전에 완료될 것입니다.

평가는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실시해야 하며, 귀하의 투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읽기와 산수에 대한 적절한 지도의 부족이나 제한된 영어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판정된다면, 귀하의 자녀는 장애 아동이라 판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공평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불이익을 항소거나 주의 민원 절차를 통해 미 실시 검토 혹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재평가 후에는 적어도 3년에 한번은 학교 측에서 귀하의 자녀를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지만, 귀하와 학교 측에서 재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적교육평가

‘독자적교육평가’란 교육청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닌, 귀하가 지정한 적합한 사람이 실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역교육청에서 얻은 평가에 대해 반대한다면, 귀하는 공적인 비용으로 독자적교육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독자적교육평가를 위해 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할 시에는, 학교 측은 반드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지불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요청하여 학교 측의 평가가 적합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교육청은 평가에 반대하는 귀하의 이유에 대해 들을 수는 있지만, 불합리하게 지체하거나 귀하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여 평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독자적교육평가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면, 귀하의 요청 시 독자적교육평가 수혜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측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적평가가 공공비용으로 실시되는 모든 경우에는 평가의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가 속한 항목은 교육청이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항목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의 관리가 평가를 지시하면, 평가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공공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관리의 최종 결정이 교육청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이라면, 귀하는 여전히 독자적교육평가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자비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비로 독자적교육평가를 받는다면, 평가의 결과는 귀하의 자녀의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과 관련된 어떤 결정이든 반드시 교육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정당한 절차의 청문회에 독자적교육평가를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 혹은 사비용으로 실시되는 독자적인 평가 보고서 접수 후 10 일 이내에 교육청은 IEP 팀이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배정

이 부분은 귀하가 자녀를 사립학교/기관에 자발적으로 배정할 때 귀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FAPE가 고려되지 않을 시 사립학교배정

주내에 거주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포함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 아동들은 반드시 거처가 확인되고, 신원이 확인되며, 평가받아야 합니다. ‘ChildFind’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 또는 홈스쿨이 위치한 공립학교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ChildFind는 3년간의 재평가를 포함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신원 확인과 평가에 대한 권리는 자녀를 사립학교/시설에 입학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귀하의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하도록 결정할 때에는, 자녀가 공립학교 입

학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전혀 없게 됩니다. 몇몇의 특수교육 서비스는 자녀가 사립학교 입학 시에도 제공될 수 있지만, 그 종류와 양은 그 사립학교가 위치한 구역의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냐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대표들과 사립학교에 입학한 장애 아동의 학부모 대표단과 함께 상의한 후 공립학교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 서비스에 배정된 제한적인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공립학교가 귀하의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라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서비스 계획(service plan)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은 목표와 자녀에게 적합한 전통적인 IEP의 요소들,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FAPE가 고려될 시 사립학교 배정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귀하의 자녀를 비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또는 청문회의 관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녀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입학 전 때에 맞춰서 관리가 그 입학 비용을 귀하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로부터 받은 배상 비용은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전 가장 최근의 IEP 모임에서 IEP 팀에게 교육청이 제안한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내지 자녀를 비공립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시키려는 귀하의 고민과 의도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만약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영업일 수로(영업일에 있는 휴일을 포함하여) 열흘 전에 교육청에 위 사항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만약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교육청이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평가 계획을 알렸는데, 자녀가 평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경우
- 재판 조사 결과 귀하의 불합리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배상 비용이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 없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영어로 읽거나 쓰는 능력이 없을 때
- 통지 요구 사항을 지켰을 때 귀하의 자녀에게 신체적 혹은 심각한 정서적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학교 측에서 귀하가 그런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 위에 언급된 통지 요구 사항에 대해 주지를 받지 못한 경우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훈육

만약 자녀의 행동이 자녀 본인의 학습이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다면, 긍정적 행동 개입법과 지지를 포함한 전략이 자녀의 IEP 발달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하면 학교 직원이 현재 배정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정학(한 학년도 동안 10일 미만)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다면, 학교 관계자가 자녀를 현위치에서 학기 중 10일 또는 그 이하의 시간 동안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교육청은 정학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장기정학 (한 학년도 동안 10일 혹은 그 이상)

학기 중 총 10일 이상의 정학은 청학 패턴과 각 정학 기간, 자녀가 학기 중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총 기간, 그리고 각 정학 기간 사이의 시간과 같은 요소에 따라 배정에 변화를 야기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훈계적 정학이 총 10일의 수업 일수를 넘는 경우엔, 교육청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선생님 중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의 상의를 거친 학교 관계자는 귀하의 자녀가 일반 교과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비록 다른 장소에 있지만 서비스가 어느 한도까지 필요한지 반드시 결정해야 하고, 정학 기간 동안 설정된 IEP의 목표에도 달하기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학기 중 10일이 넘는 훈계적 정학을 받으면 학교 관리들이 배정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청 측의 결정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학 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날에 귀하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를 한 부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생님 중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의 상의를 거친 학교 관계자는 정학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자녀가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개입 서비스와 수정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 위반을 제기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추가로, IEP 모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다만 표명 결정 심사를 치르기 위해서 정학 결정 후 10일의 수업 일수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징후 결정 심사(MDR)

징후 결정 심사를 실시할 시에 IEP 팀은 자녀의 IEP, 직원 관찰, 그리고 귀하가 제공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 자녀의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것입니다. IEP 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 ◆ 행동이 귀하의 자녀의 장애 때문에 유발되었는지 또는 장애와 직접적이며 상당한 관련이 있는 지 여부
- ◆ 행동이 자녀의 IEP를 도입하는데 실패한 교육청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만약 팀에서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귀하의 자녀의 행동은 장애에 의한 징후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A. 장애의 징후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IEP 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배정에 변화를 유발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청에서 그러한 평가를 이미 실시하

지않았다면기능적행동평가의실시와행동중재계획의도입

- 행동중재계획이실시되고있는상황에는,문제행동을제기하기위해필요한행동중재계획의재검토또는계획의수정
- 자녀가마약,흥기,또는심각한신체적상해로인해잠정적대안교육장소로이동되었을때를제외하고,귀하와교육청이배정이전에대해동의하는경우가아닐때엔배제되었던곳으로다시자녀를돌려보내는것(잠정적대안교육장소에대해서는아래정보참조).

B. 장애의징후가아닌경우

만약귀하의자녀의행동이자녀의장애와 관련이없다고판정된다면,10일이상의수업일수동안정확된다면장애학생은반드시무상의적절한교육을지속적으로받아야한다는점을제외하고,장애가없는학생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적절한훈계절차가따를것입니다.

만약지역교육청이모든학생에게적용되는적절한훈계절차를밧는다면,교육청은귀하자녀의특수교육및훈계기록을문제행동에대한최종판정을내리는사람(들)에게참고정보로전달해야합니다.

신속한적법절차에따른심사

훈계배정이나징후결정심사에서내려진결정가운데반대하는것이있다면,귀하는신속한정당한절차에따른심사를요청할권리가있습니다.지역교육청이나ISBE는귀하가서면으로신속한정당한절차에따른심사를요구할시반드시심사를마련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교육청이귀하의자녀를현재배정위치에계속둔다면자녀자신이나다른이들을다치게할가능성이상당히있다고생각되면, 학교측은자녀의배정을조정하여잠정적대안교육장소로보내기위해신속한정당한절차에따른심사를요구할수있습니다. 심사관리는귀하의자녀의행동이장애의징후라할지라도배정을지시할수있습니다.

신속한심사는반드시심사요청일로부터20일의수업일수내에실시되어야하며,심사일로부터10일의수업일수내에판정결론이나야합니다.

잠정적대안교육장소(IAES)

잠정적대안교육장소는훈계의목적으로다른장소에서특정한기간동안교육서비스가제공되는것을말합니다.이장소는IEP팀이결정할것이며,비록다른장소에서이뤄지지만귀하의자녀가일반교과과정을지속적으로밧을수있는장소로선택되어야하고,IEP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마련된현IEP에명시되어있는서비스및수정안이포함된서비스를계속하여제공받아야합니다.대안장소는또한정확을유발한문제행동을제기하기위한서비스와설비를반드시포함해야합니다.

만약귀하의자녀가다음과같은행동을했을시,학교관계자는귀하의동의없이자녀를현교육장소에서배제시켜잠정적대안교육장소로옮길수있습니다.

- ◆ 학교또는학교행사에흥기를가지고올경우

- 학교또는학교행사에서의도적으로불법약물을보유,사용,혹은규제약물을판매또는권유할경우
- 학교또는학교행사에서타인에게심각한신체적상해를입힌경우

문제행동이자녀의장애징후라는또는징후가아니라는판정여부와상관없이,잠정적대안교육장소로의배제는45일의수업일수를넘길수없습니다.

결정에반대하여그게대항하기위해신속한정당한절차의심사를요청한다면,귀하와교육청측에서다른방안에대해동의하지않는이상귀하의자녀는잠정적대안교육장소에심사계류기간동안혹은45일수업일기간이만료될때까지머물것입니다.교육청은45일의수업일기간이끝난후에도귀하의자녀가위험하다고생각되면후속의신속한정당심사절차와대안배정을시도할수있습니다.

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에대한자격요건이없는학생들을위한보호책

만약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에대한자격요건이없다고판정되었지만,훈계를야기한문제행동을일으키기전에귀하의자녀에게장애가있다는사실을교육청에서인지하고있다면, 장애아동에게제공되는것과동일한보호를훈계과정가운데주장할수있습니다.

만약다음사항에해당되면교육청이자녀의장애에대해인지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 ◆ 귀하가서면으로(혹은부모/보호자가읽거나쓰는능력이없으면) 자녀가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를필요로한다고걱정을표현한경우
- ◆ 자녀의행동이나학교생활에서특수교육의필요성이보이는경우
- ◆ 귀하의자녀가특수교육이필요한지알기위한평가를요청한경우
- ◆ 자녀의선생님중환사람혹은교육청직원이특수교육담당자나다른적합한교육청관계자에게특수교육서비스에대한요청을한경우

다음의경우,교육청이장애에대한인식이없었다고할수있습니다.

- ◆ 귀하가자녀에대한평가를허락하지않은경우
- ◆ 귀하가서비스를거부한경우
- ◆ 평가가실행되었고그결과자녀가장애를가지고있지않다고판단된경우
- ◆ 평가가필요하지않다고판정되어서면으로이판정에대해귀하가통지받은경우

만약학생에대해훈계적실행을실시하기전,지역교육청에서학생의장애보유사실을전혀모르고있었다면,학생은비슷한행동을일으킨비장애학생들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훈계적절차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학생이훈계적절차의대상이되는기간중요청되는평가는반드시신속하게실시되어야합니다.하지만,학생은반드시학교당국이결정한교육장소에남아평가결과를기다려야합니다.만약평가에의해학생이장애가있는학생으로판정이된다면,지역교육청은반드시적합한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법집행과사법당국의실행및위탁

지역교육청또는다른기관들은적절한관계당국에게장애를가진학생이저지른법행을보고하

는것이금지되어있지않습니다.더불어,주법집행과사법당국은장애학생이범한범죄에대해연방또는주법을적용하는데있어자신의의무를다하는것이금지되어있지않습니다.

장애를가진학생이저지른범죄를보고하는지역교육청또는다른기관들은적절한관계당국의관계자들에게학생의특수교육과훈계에대한기록을그들에게전달하여참고하게끔해야합니다.

민원해결

학생의신원확인,평가,교육적인배정또는수수료의제공,학생에게적절한공교육을제공하는것과관련된사항을지역교육청에민원제기할수있습니다.

귀하는장애를가진귀하의아동또는여러아동들의권리가침해당했음을주장하면서,ISBE에게서명된,서면화된고소장을제출할수있습니다.공식적인민원에는다음의정보가포함되어야합니다.

- ◆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이 특수교육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진술
- ◆ 해당 진술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
- ◆ 연관되는 학생들과 참여 학교들의 이름들과 주소들
- ◆ 고소를 위한 서명과 연락처 정보
- ◆ 해당 자녀의 문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실
- ◆ 알려진 만큼의 해당 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결책

고소장에서는 침해가 고소를 받은 날짜 이전의 1년 이상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기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소장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ISBE는 다음을 이행할 것입니다.

- ◆ ISB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자적 현장 조사 수행
- ◆ 귀하에게 주장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회 제공
- ◆ 고소 대상인 공공 기관이 고소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 요구. 해당 공공 기관은 당 에이전시가 고소장을 접수 받은 지 45일 이내에 답변 및 기타 모든 문서를 ISBE와 고소장을 접수한 학부모, 개인, 혹은 조직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 및 기타 모든 문서를 ISBE에 제출해야 한다.
- ◆ 해당 공공 기간에 고소 과정 중 고소를 해결할 제안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혹은 부모에게는 분쟁 해결에 대한 중재 또는 대안적인 수단을 제시할 기회 제공
-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공공 기관이 특수교육 요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결정
- ◆ 각 주장을 제기하고 사실과 결론들에 대한 소견들, ISBE의 결정들에 대한 이유들, 어떤 교정 활동들에 대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서면화된 결정서를 발급

시간 제한 이외의 적인 상황들 하에서 연장되지 않는다면 또는 귀하와 교육청이 조정과 같은, 또 다른 분쟁 해결의 방법에 관련된다면, 60일 일정 이내에 서 이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의(duo process hearing) 주제가 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논쟁점들을 포함하는 고소가 제출된다면,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그 고소의 일부들은 일시 중지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합당한 과정 심의에서 한 논쟁점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심의로부터 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을 것이고 고소 과정을 통하여 그 논쟁점은 조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

일리노이주조정위원회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귀하는 미정의 적법 절차 심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적법 절차 심의를 연기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조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교육청 모두는 자발적으로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ISBE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되고 귀하 또는 교육청에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효과적인 조정 기술들에 있어서 훈련받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식견이 있는 자격이 있고 공평한 조정자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조정자는 공평한 제3자이고 각 당사자에 의한 어떤 활동을 강요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의 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한 편당 세 사람들에 제한될 것입니다. 귀하는 변호사, 옹호자, 통역자, 다른 관련 당사자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 동안 일어나는 모든 토론들은 기밀이 유지되며 차후의 모든 적법 절차 심의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조정 동안 귀하의 자녀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포기하도록 요청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a) 귀하의 아동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고, (b) 다른 당사자가 표현하는 관심사들을 청취하고, (c) 귀하의 아동의 재능과 지역 교육청의 의무들과 자원들에 대해 현실적 이도 요청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조정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합의는 서면화되고 귀하와 그러한 합의를 맺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대표자 모두 합의에서 명할 것입니다. 재판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법정 또는 미국의 지역 법정에서 조정 합의를 법적으로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 배정을 변경하자는 교육구의 제안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중재 요청에서 “그대로 있기 (stay-put)”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대로 있기 (stay-put)” 배정은 당사자들간에 마지막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한 당사자가 중재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 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학생)는 “그대로 있기 (stay-put)” 배정을 지속하기 위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거부일로부터 10일이 주어집니다.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가 실패한다면, 해당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 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학생)은 “그대로 있기 (stay-put)” 조항의 적용을 지속하기 위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제기하도록 결론이 난 중재 이후 10일이 주어집니다.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발생하는 조정과 조정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서면화된 합의(들)의 조건들을 적어둘 목적이 아니라면 차후의 모든 행정 소송 절차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조정자는 차후의 모든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조정 서비스들을 요청하거나 또는 조정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알기를 바란다면, 217/782-5589로, 또는 부모를 위해 장거리 전화료가 무료인 866/262-6663으로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특수교육 서비스국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법 절차 심의

적법절차심의요청

귀하는 조정과 주의고소 절차들을 사용하는 것에 덧붙여서, 공평한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적법절차 심의는 심의위원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귀하와 교육청으로부터 증거를 모으고 증언을 듣는 법적인 과정입니다. 귀하는 또는 교육청은 교육청이 학생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교육배치하는 것 또는 교육청이 자유로운, 적절한 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제안 또는 거절에 대한 적법절차 심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심의요청은 최근 2년간 일어난 일이나 혹은 귀하의 자녀의 서비스배정과 관련된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의 2년간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거주하는 교육청의 관리자에게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학생의 이름과 주소
- 다니는 학교 이름
- 문제와 관련되는 사실들을 포함하여, 귀하가 고소하고 있는, 제안된 실시 또는 변화와 관련된 문제의 성질에 대한 설명
- 그당시에 부모에게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 제안되는 문제의 해결안

해당 교육청은 심의에 대한 요청을 받아 들이는 5일내에, 공평한 적법절차 심의위원의 지명을 요청하기 위해 보증된 우편으로 ISBE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모형 형식은 요청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귀하가 교육청에 심의요청을 제기하는 달력상의 5일내에, 귀하가 최초로 심의를 요청할 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논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는 수정된 심의요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달력상의 5일후에, 교육청의 합의와 함께, 또는 심의위원이 권한부여하는 것과 함께 단지 수정된 심의요청을 제기하도록 허용받을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의 심의요청시의 논쟁점들과 다른 논쟁점들을 제기하는 수정된 심의요청을 제기한다면, 모든 심의일정이 다시 시작되며, 잠재적으로 새로운 결의세션들과 심의전회의들을 종결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아래참조).

조정회의

해당 교육청은 공평한 적법절차 심의전에, 귀하와 함께 그리고 적법절차 심의에 대한 요청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IEP팀의 관련된 구성원들과 함께 모임을 소집할 것입니다. 조정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심의동안 귀하의 요청을 그리고 요청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실들을 논의하여 교육청이 그 논의를 해결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조정회의는

- 적법절차 심의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을 통지받은 15일내에 열 것이며,
-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교육청의 대표자를 포함할 것이고,
-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지역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 귀하가 적법절차 심의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논의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귀하와 지역은 조정회의를 보류하기 위해서 서면으로서 합의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정과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해결세션이 성공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중날짜에조정을사용할수있음을주목하십시오.

해결책이도출된다면,당사자들은귀하및해당교육청을구속할권위를가지고있는교육청의대표자가서명하는법적으로구속력있는합의를시행해야합니다.재판권에대한관할권을가지고있는어떤주의법정에서도또는미국의지역법정에서서명된합의가정상적으로시행될수있습니다.그러나,당사자는다른당사자에게서면으로합의를무효로할의도를통고함으로써합의에서명하는세사업날들내에그러한합의를무효로할수있습니다.

교육청이요청을받아들이는30일내에적법절차심의에대한요청을귀하가만족스럽도록해결하지못했다면,적법절차심의는지속될것입니다적법절차심의일정은30일이만료되는때에서작할것입니다.

귀하와교육청이결의모임을보류하거나조정을사용하기를공동으로합의한경우와귀하가적법절차심의에대한요청을제기한경우를제외하고,귀하가조정회의에참여하지않는것은모임이열릴때까지조정회의및적법절차심의에대한일정들을연기하게될것입니다.드문경우이기는하지만,귀하가교육청이결의세션을집행할능력의의도적으로방해했다고단정된다면심의위원은귀하의심의요청을기각할수있습니다.

공평한합당한과정심의위원의지명

ISBE는 심의를 집행할 공평한 심의위원을 지명할 것입니다. 심의위원은 귀하의 자녀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것에 관련되는 어떤 기관의 고용인이 될 수 없고 심의에서 객관성과 상충될 어떤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적법절차 심의의 당사자에게는 심의위원을 교체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귀하가 심의위원의 지명을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ISBE에게서면으로 심의위원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ISBE는 귀하 및 교육청이 동일한 날에서면화된 요청서들을 제출하고 이것들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심의를 처음에 요청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교체를 고려할 것입니다. 다른 당사자의 대치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심의에 대한 당사자가 교체에 대한 적절한 요청을 제출할 때, ISBE는 3일 이내에 임의로 또 다른 심의위원을 선택하고 지명할 것입니다.

지명된 심의위원은 당사자들이 자신이 지명된 것을 통고받기 전에 쓸모없어지거나 자신을 면직시킬 때, ISBE는 새로운 심의위원을 지명할 것입니다.

심의전의회의

귀하와 교육청이 해결과정을 통하여 합의에도달할 수 없다면, 적법절차 심의 요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심의위원이 허용될 수 있는 시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해결세션과정의 종결 후 45일 이내에 심의결정이 언도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은 심의를 집행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심의전의회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지명된 심의위원은 ISBE의 서면화된 통고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심의전의회의를 소집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귀하와 교육청 모두와 상담하여 심의위원이 판단하여 전화로 또는 개인적으로 심의전의회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귀하도 심의전의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 1) 심의에서는쟁속에있는것으로 믿어지는 논쟁점들
- 2) 심의에서요청될수있는증언들
- 3) 심의에서소송을제안하기위해제출될수있는문서들의목록

귀하가귀하의심의요청에포함되지않았던심의전회의에서는쟁점들을제기한다면,나중의날
짜에수정된심의요구를제출하고새로운결의세션과심의전회의를완료하도록요청받을수있습
니다.수정된심의요청은또한심의의지연을초래할수있습니다(위“적법절차심의요청”참조).

심의위원은심의전회의를종결하는것에있어서,회의에대한보고서를준비하고그것을심의기
록에기재해야합니다.보고서는다음을포함해야하지만,다음에제한될필요는없습니다.

- ◆ 당사자들또는증인들을위해만들어진논쟁점들,진술의순서,어떤일정조정
- ◆ 당사자또는심의위원이제기한다면,문서들또는증인들의적절성과구체성에대한결정
- ◆ 심의전회의동안논의되는것으로서명기된(또는합의된)사실들의목록

심의전의권리

귀하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집니다.

- 장애를가진학생들의문제들과관련하여특별한지식을가진법률고문과개인들을동반
하여조언받을권리
- 학생에게속해있는모든학교기록들을검사하고검토하고그러한어떤기록들의사본들
을구할권리
- 교육청의독립적인평가자들에대한목록에접근하여귀하자신의비용으로학생에대한
독립적인평가를받을권리
- 제출될어떤증거의심의전최소한5일전에통지를받을권리
- 심의중인어떤지역교육청고용인의,또는학생의요구들,능력들,제안된프로그램,또는
신분과관련된정보를가질수있는어떤다른사람의참석을강제할권리
- 심의동안통역자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요청할권리
- 모든행정적및사법적소송들을끝낼때까지학생의배치와적격성신분을유지할권리
- 귀자녀의배치를변화시키기위해또는귀하가교육청의표명결정에또는교육청이학생을
임시의대안적인교육적인배경으로이동시키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면신속하게처리
되는심을요청할권리

심의중의권리

귀하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집니다.

- 정당하고,공평하고,질서있는심을가질권리
- 논쟁중인논쟁점을지지하고/지지하거나명시하는데필요한증거, 증언, 논증들을제시
할기회를가질권리
- 심의가공중에게드러나지않게할권리
- 귀하의자녀에게심의에참석하게할권리
- 증인들과대면하여반대신문할권리
- 심의이전최소한5일전에공개되지않은증거를받아들이는것을금지할권리

심리

ISBE와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이 각 당사자의 요청시에 특별한 시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심의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인 후 45일 이내에 심의를 여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종결시킨 후 10일 이내에, 논쟁 중인 논쟁점들,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판결, 심의위원의 법과 질서에 대한 결정에 착수하는 서면화된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이 학생에게 소송의 사실들에 기초된 자유로운 적절한 공적인 교육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심의 요청시에 제기되는 모든 논쟁점들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당사자들이 심의 이전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훈육” 참조), 귀하가 교육청이 훈육의 문제들로 인해 귀하의 자녀를 현재의 교육적인 배치로부터 이동시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때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들은 정규의 적법 절차 심의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적법 심의와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달력상의 7일 이내에 해결 세션을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20일의 수업일 내에 심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 심의를 종결하는 10일의 수업일 내에 심의 결정이 언도되어야 합니다.
- 지명되는 심의위원의 대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명시

에 대한 요청

심의위원회는 한 결정을 발표한 후, 각 당사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소송에 대한 재판 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귀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후 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게서 서면으로 요청을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의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에 대한 요청은 귀하가 명시를 구하는 결정의 부분들을 상술해야 합니다. 심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ISBE에게 우편으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10일 이내에 상술된 결정의 부분에 대한 명시를 발표해야 하거나 서면으로 요청에 대한 거절을 발표해야 합니다.

항소하기

적법 절차 심의 후, 심의위원의 최종적인 명령에 불만족한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결정의 사본이 우편으로 당사자들에게 발송된 후 120일 이내에 재판 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법정에서도, 또는 미국 지역 법정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를 할 법정을 위한 서기의 사무실에서부터 그러한 소송들을 제기하는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정 유지

귀하의 자녀는 계쟁 중의 적법 절차 심의 또는 어떤 재판 소송 절차 동안, 적격성 신분과 특수 교육과 심의 요청을 제기하는 때에 제공되는 관련되는 서비스들과 함께 현재의 교육 배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훈련상의 부수 조건에 반응하여 학생의 배정을 변화시켰고 이 배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에 종속된다면, 신속히 처리되는 심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교육청의 새로운 배정을 유지할 것입니다(위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훈육” 참조).

변호사 수수료 지급

재판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교육 법령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하에서 초래되는 어떤 소송에서, 타당한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수수료는 귀하의 변호사가 적법 절차 심의 소송들에서 귀하의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것과 연결하여 지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법정은 그러한 수수료를 다음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에게 승소한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
- 경솔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동에 대한 고소 또는 차후의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의 변호사에 맞서 승소한 주 교육 기관 또는 교육청
- 부모의 고소 또는 차후의 소송 사건이 괴롭히기,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시키기 또는 소송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어떤 부적당한 목적을 위해 제시되었다면, 부모의 변호사에게 맞선, 또는 부모에 맞서 승소한 주 교육 기관 또는 교육청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종류와 질을 위한 소송이 (action 또는 proceeding) 일어나는 지역 사회에서 우세한 요금에 기초될 것입니다. 법정은 지워진 불합리한 요금, 불필요하게 오래 끈 소송들, 또는 당사자들 간의 해결 합의의 존재를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기초하여 변호사 수수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촉구됩니다.

교육적인 대리부모

학생의 입학 이후 거주 지역의 교육청은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을 위해 위탁된, 또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확인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거나 아동이 주 거주 시설에서 거주하는 주의 피보호자라면, 그리고 거주 시설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설 대표는 ISBE에 대리부모 임명 요청을 제출하여 아동의 교육 권리의 보호가 보장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의 피보호자라면, 아동의 보호를 감독하는 판사는 대안적으로 대리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동행자가 없는 집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 대리부모를 임명할 것입니다. 양부모의 집 또는 친척 양육자의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더 이상 교육적인 대리부모의 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부모 또는 친척 양육제 공자는 자신의 집에 배치된 각 아동의 교육적인 요구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의 학교가 귀하를 대리부모로 임명한다면, 이 서류에 설명되는 권리들 중 모두가 귀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호에 관련되는 공적인 기관의 고용인이 될 수 없고, 아동과 이해관계의 갈등을 가질 수 없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져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 시설의 고용인이라면, 시설이 단지 아동을 비교육적으로 돌볼 때 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교육적인 대리부모로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교육적인 대리부모로서, 신원의 확인, 평가, 교육적인 배치, 자유롭고, 적절한 공적인 교육의 제공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아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기록들

지역구는 자녀의 교육관련 기록의 기밀 유지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학부모로서 교육구에서 수집, 유지 또는 이용하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지체 없이, 그리고 학생의 확인, 평가 또는 배치와 관련된 회의 전에 교육 기록을 검토하라는 요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록 검사 및 복사는 요청이 이루어진 후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5 일간의 영업일을 더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록은 오프 사이트 또는 여러 위치에 저장됩니다.
- 요청은 상당한 수의 지정된 기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 요청에 광범위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 기록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요청이 학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 요청에 관해 다른 공립 교육 기관이나 교육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군이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15 일 (업무일 기준) 이상 경과된 날에는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라는 요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록들의 설명과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요청들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
- 귀하의 대리인이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하게 할 권리
- 교육 기록들의 사본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존되는 장소에서 그것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유력하게 막을 것이라면 교육청에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지역의 교육청이 귀하가 후견인의 임무,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들을 관리하는 응용될 수 있는 주의 법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언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 기록이 한 사람 이상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면,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만을 검토하거나 특별한 정보를 보고 받도록 허락 받을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청은 귀하가 요청할 때에, 귀하에게 교육청이 모고, 유지시키거나 사용하는 교육적인 기록들의 형태들과 위치들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조사, 검색 및 복사에 대한 비용

지역의 교육청은 정보를 조사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육청은 수수료가 귀하가 그 기록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유력하게 막지 못한다면 복사되는 기록의 페이지당 0.35 달러 이상 이 아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접근

교육청은 주 또는 연방 법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와 함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청은 당사자의 이름, 접근이 주어진 날짜, 당사자가 기록들을 사용할 권한을 받는 목적

을포함하여,수집되고,유지되거나사용되는교육적인기록들에대한접근을얻는당사자들에(부모와지역교육청의권한을부여받은고용인들을제외하고)대한기록을보유해야합니다.

부모의요청시에기록들에대한수정

귀하가귀하의자녀의기록들에있어서의정보가부정확하거나오해하기쉽거나귀하의자녀의권리들을침해한다는것을믿는다면, 교육청에그기록을수정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지역의교육청은귀하의요청을받아들이는날짜로부터15일의수업일내에정보를수정할지를결정해야합니다.교육청이요청에따라정보를수정하기를거절한다면,귀하에게그거절을통고하고아래에설명되는대로귀하가기록들의심의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음을조언해야합니다.

교육청은요청시에,귀하에게귀하의아동의기록들에있어서정보에이의를신청하기위해기록들의심의에대한기회를제공해야합니다.이것은적법절차심의가아니며ISBE가지정하는심의

위원앞에서열리지않으며오히려지역의수준에서열리는심의입니다.

기록들의심의에대한결과로서,정보가부정확하고,오해하기쉽거나,귀하의자녀의권리를침해한다고결정된다면,교육청은정보를수정하고귀하에게그렇게하였음을서면으로통고해야합니다.

기록들의심의의결과로서,정보가부정확하고,오해하기쉽거나귀하의자녀의권리들을침해한다는것이결정된다면,교육청은귀하에게정보에대해비평하는진술을또는교육청의결정에합의하지않는것에대한어떤이유들을제시하는진술을둘 권리에대해통고해야합니다.교육청은교육청이기록또는논쟁되는부분을보존하는동안귀하의자녀의기록들의일부로서귀하의자녀의기록들속에두어지는설명을보존해야합니다.교육청이어떤당사자에게기록들을드러낸다면,그것에대한설명또한드러나야합니다.

부모의권리이전

귀하의자녀는18세의나이에성인학생이됩니다.교육청이달리통고를받지않는한,그때에이문서에서논의되는부모의권리들의모든것이그/그녀에게이동될것입니다.귀하는서면화된통고들이전에요구되는것의모두를받을 권리를공유할것이고학교는귀하와귀하의자녀모두에게이통고들을제공할것입니다.

IEP는귀하의자녀의열일곱번째생일에또는그이전에,귀하와귀하의자녀에게자녀의열여덟번째생일에이권리들이이동될것이라는것을통고했다는진술을포함해야합니다.덧붙이자면,귀하는이모임에서교육의사결정권한위임(DelegationofRightstoMakeEducationalDecisions)양식을받을것입니다.

귀하의자녀는귀하또는또다른개인이귀하의자녀가성년의나이에달할때교육적인관심들을표현하도록위임하기위해이양식을사용하기를결정할수있습니다.이양식은지역교육청에제출해야합니다.

교육의사결정권한위임양식은지정된개인이귀하의자녀의교육적인권리들을표현하는것을확인하고귀하의자녀의서명뿐만아니라개인의서명을포함해야합니다(혹은개인의장애에적합한오디오또는비디오형식과같은수단들에의해서).귀하의자녀는어떤때이고 권한위임을종결시킬수있고자신의교육적인결정을하기를시작할수있습니다.교육의사결정권한위임은서명후1년동안효력이있으며해마다갱신할수있습니다.

특수교육프로그램을담당하는미국의교육부는(UnitedStateDepartmentofEducation)이부모권리들에대한진술을발달시켰고,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IllinoisStateBoardofEducation,ISBE)이진술이일리노이규칙을따르도록조정했습니다.

2004년의장애교육법령과(DisabilitiesEducationActof2004)(IDEA2004)함께다시권한을부여받은개인들은2004년,12월3일에법령에서명했습니다.법령의조항들은2005년7월1일에효력이있었습니다.일리노이주의교육위원회는(ISBE)귀하에게연방법에대한변화들하에서의귀하의권리들을보고하기위해이소송절차상의보장조항들에대한공고(NoticeofProceduralSafeguards)를제공해왔습니다.

정책지침서최

소제한환경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

2000년2월

주교육위원회공약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ISBE")는 1997년 제정된 장애인 교육법("IDEA" 97)의 요구 사항들과 관련 규정 34 C.F.R. §300.550-330.556을 충족하도록 최소제한 환경("LRE")에 관한 정책을 승인하고 채택합니다.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 일리노이주가 사실상 타당한 최소제한 환경 정책이나 관련 규칙과 규정을 두도록 연방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 주 위원회의 통제와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공립이나 사립 기관, 탁아 시설들이 최소제한 환경의 신조를 알고 실천하도록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소제한 환경에서의 편성

최소제한 환경은 적절한 최대한의 정도까지 공립이나 사립 기관 혹은 다른 탁아 시설의 3세에서 21세 사이의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34 C.F.R. §300.550(b)(1)].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 숙고한 첫 편성 선택이 필요한 추가 원조와 서비스의 사용으로 정규 교육 환경이 되도록 장애 학생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기관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정규 교육 환경으로부터 배제된 특수 학급, 독립된 학교 교육, 혹은 다른 편성은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으로 인해 정규 교실 환경에서의 교육이 추가 원조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 없다고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겨야 합니다.

대안 편성의 연속

개개의 책임 있는 공립이나 사립 기관은 대안 편성의 연속이 장애 학생들의 필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런 학생들이 특수 교육과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확실히 받는다는 확신을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에 주어야 합니다. 대안 편성의 연속은 정규 학급, 특수 학급, 특수 학교, 가정 교육에서의 교육과 병원과 기관에서의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은 편성 결정을 개별 장애 학생의 확인된 필요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팀은 학생 개인의 필요가 개인의 지원과 도움으로 정규 교육 교실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또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제한 환경 조항과 학생의 필요라는 견지에서 더 제한적인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편성을 결정한 개개의 공립이나 적절한 사립 기관은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에 다음의 내용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1. 편성은 개개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기록된 대로 개별 장애 학생의 확인된 필요에 근거해야 하며 목표와 목적/기준이 결정된 후에 고려됩니다.
2. 장애 학생의 편성에 대한 결정은 아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부모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각 학생의 확인된 특정한 필요에 부합하는 편성 선택을 고려할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내려집니다.

3. 편성결정은주와연방의법률,규칙과관련규정에서참조하여최소제한환경조항에따릅니다.
4. 장애학생들의편성은최소한1년에한번씩결정됩니다.
5. 편성은학생의가정에서가능한가까이에정해집니다.첫번째고려사항은장애학생이아니라면학생이다니게될학교이며,최소제한환경에서무료로적절한공립교육을보장하기위해서는학생의욕구가다른장소를필요로한다고개별화교육프로그램팀이결정한경우에한해서다른편성이고려됩니다.
6. 일반적인교육환경에서장애학생의전시간제편성은추가원조와서비스조항에도불구하고다른학생들의교육을심대하게저해함으로써학생이전체혹은일부의일반적인교육환경에큰혼란을일으키는상황에는적당하지않습니다.
7. 단순히일반교육커리큘럼의변경이나지원또는서비스가필요하다고해서아니면행정적인편의때문에장애학생들이연령에맞는정규교실에편성되는일에배제되지않아야합니다.
8. 적절한최대한의정도까지장애학생들은정규교육커리큘럼에포함됩니다.개별화교육프로그램은일반교육커리큘럼의향상과개입에있어야동장애의영향에관한진술을포함해야합니다
9. 각학생의개별화교육프로그램은학생이주그리고/혹은관할지방평가에참여할것인지,참여한다면완전하게할것인지아니면부분적으로할것인지그리고여하한의변경이나조정이적절하고필요한지를명시합니다. 장애학생이이런평가에서배제된다면개별화교육프로그램팀은어떤대안평가기술이사용될것이며접수가어떻게합산돼서보고될지를기술합니다(34C.F.R.§300.138-300.139).

비학문적환경

최소제한환경명령은비학문적인서비스와정규과목이외의활동에도적용합니다. 장애학생을다루는교육청과다른기관들은그런활동에참여할수있는동등한기회가이학생들에게있음을보장해야합니다(34C.F.R.§300.553). 학군이나적절한사립기관이장애학생에게적합한비학문적이고정규과목이외의서비스/활동을제공하거나마련할때개별화교육프로그램팀은참여에필수적인추가원조와서비스를결정해야합니다. 비학문적이고정규과목이외의서비스/활동은식사,휴식시간,상담서비스,체육,교통수단,건강서비스,여가활동,특수이식단체,개별장애인에게도움을제공하는기관추천에만국한되지않고공립기관에의한고용과외부채용주선의학생취업을포함해도무방합니다[34C.F.R.§300.306(b)].

공립,비공립혹은사립시설의어린이

장애학생들이최소제한환경에서교육을받고무료로적절한공립교육을받도록하기위해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적절한공립과사립기관그리고필요할경우관련주립기관과계약을할것입니다.

기술적인지원과교육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장애학생들을다루는공립기관의교사와사무관들이최소제한환경요구사항의이행을위한그들의책임에대해서충분히숙지하도록할것입니다.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이와같은노력을지원하는데필요한기술적인원조와교육을제공할것입니다.

감시활동

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는최소제한환경요구사항이실행되도록공립기관을감시할것입니다.최소제한환경명령과일치하지않는편성이이루어졌다는증거를일리노이주교육위원회가발견하면,직원이공립기관의정당성

과증거문서를검토하고기관으로하여금여하한의필요한교정행동을계획하고이행하도록도와줄것입니다.